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722
----------	-----

2022. 4. 25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4. 13. / 남양주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. 4. 1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4. 25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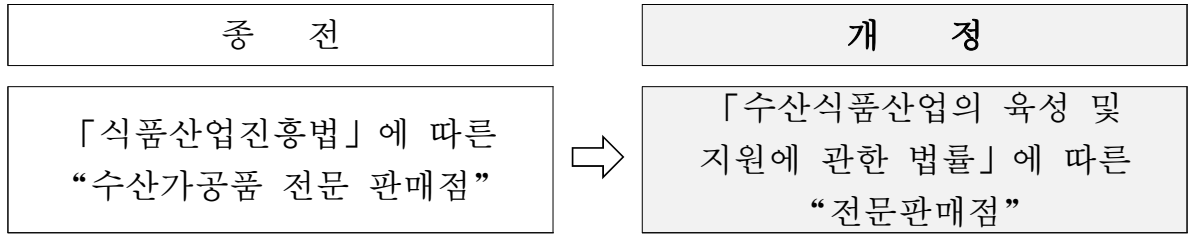
-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조항 삭제(안 제3조)
 -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

종 전	개 정
조례로 재산세 50% 범위내 감면율을 정함	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재산세 50% 감면율 명시

- 관련 상위법 변경사항 반영(안 제2조제3호)
 - 감면대상을 규정하는 상위법 변경(수산가공품 전문 판매점)

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28일 개정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상위법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안 제3조를 삭제하고, 안 제5조의 제3호의 근거 법률인 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서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 제정(2020년 2월 18일)됨에 따른 법률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